

광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611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철우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맥

담당변호사 송진민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일자별 각 변제를

341,334,03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341,334,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금전채권

- 1) E에게, 원고 B는 2017. 11. 14. 5,0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 같은 해 12. 7.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원고 A는 2017. 12. 8.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 2) 원고 주식회사 C는 2019. 10. 22. 기준으로 E에게 7,155,997원 상당의 외상매입금 채권과 3,384,545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E의 변제행위

E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12. 31.경부터 피고 측에 변제를 하였거나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다. E의 재산상태

E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변제 내지 금원 지급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E에 대하여, 원고 A는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원고 B는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C는 10,540,542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 주식회사 C는 위 채권 외에도 130,793,494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F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질권을 원고들이 양수하였으므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② 당시 E 대표였던 G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변제기 후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실이나, G은 이미 최초 대여 당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와 G이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G이 대여금 채권 변제기 후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공정증서 상의 금액은 전체 대여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E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E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봄메, 판사 류봉근, 판사 김대현

별지

1. 일반 상환액 : 217,250,000원

일자	이름	금액	비고
2019-11-06		70,000,000	농협
2019-11-08		10,000,000	농협
2019-11-11		10,000,000	신한은행
2019-11-11		1,200,000	신한은행
2019-11-11		40,000,000	농협
2019-11-11		1,850,000	신한은행
2019-11-11		10,000,000	농협
2019-11-12		10,000,000	농협
2019-11-13		10,000,000	농협
2019-11-15		30,000,000	농협
2019-11-20		4,200,000	신한은행
2019-11-21		10,000,000	농협
2019-12-20		10,000,000	신한은행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법인통장 중 확정증명 소송가액 출금액 : 55,001,928원

일자	내용	금액	비고
2020-02-11	광주지방법원 2019 타채 13104	50,000,000	농협
2020-02-11	광주지방법원 2019 타채 13104	5,001,928	농협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외상매출금 204,126,150원

일자	내용	금액	비고
2019-12-03	외상매출금()	10,000,000	개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됨
2019-12-11	외상매출금()	12,209,410	개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됨
~현재까지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중

4. 사업소득 명목으로 이자 상환 : 71,074,500원

일자	이름	금액	비고
2019-05-03		725,250	농협
2019-05-03		1,450,500	농협
2019-05-03		2,175,750	농협
2019-05-03		2,901,000	농협
2019-05-03		2,901,000	농협
2019-05-31		725,250	농협
2019-05-31		1,087,875	농협
2019-05-31		725,250	농협
2019-05-31		2,175,750	농협

2019-05-31		2,538,375		농협	
2019-05-31		2,901,000		농협	
2019-07-01		725,250		농협	
2019-07-01		1,087,875		농협	
2019-07-01		725,250		농협	
2019-07-01		2,175,750		농협	
2019-07-01		2,538,375		농협	
2019-07-01		2,901,000		농협	
2019-07-31		725,250		농협	
2019-07-31		1,087,875		농협	
2019-07-31		725,250		농협	
2019-07-31		2,175,750		농협	
2019-07-31		2,538,375		농협	
2019-07-31		2,901,000		농협	
2019-09-03		561,827		농협	
2019-09-03		1,087,875		농협	
2019-09-03		725,250		농협	
2019-09-03		2,175,750		농협	
2019-09-03		2,538,375		농협	
2019-09-03		3,064,423		농협	
2019-09-30		561,827		농협	
2019-09-30		1,087,875		농협	
2019-09-30		725,250		농협	
2019-09-30		2,175,750		농협	
2019-09-30		2,538,375		농협	
2019-09-30		3,064,423		농협	
2019-10-31		1,087,875		농협	
2019-10-31		725,250		농협	
2019-10-31		2,175,750		농협	
2019-10-31		2,538,375		농협	
2019-10-31		3,064,423		농협	
2019-10-31		561,827		농협	

5. 대여금 이자로 상환 : 17,604,395원

일자	이름	금액	비고
2018-12-31		4,259,223	농협
2019-02-01		5,457,606	농협
2019-03-04		3,614,716	농협
2019-04-01		4,272,850	농협

